#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42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정희용·서천호·김선교

강승규 • 박덕흠 • 송언석

배현진 • 박준태 • 박충권

조지연 · 김성원 · 백종헌

정동만 의원(13인)

### 제안이유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변동성을 가중시켜 결국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어렵게만드는 원인이 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이에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

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경우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에 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의2제1항 후단 신설).
- 나. 주산지협의체는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시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음(안 제4조의3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재배면 적 관리,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4조의5 신설).
- 마. 농림업관측을 위한 조사·분석 대상을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요량 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함(안 제5조제1항).

- 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 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행하는 거래인 계 약거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제9조).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농산물 수급관리방안)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산물 수급관리방안(이하 "수급관리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할수 있다.

-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시기
-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

- 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수급관리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의4(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이 하 "수급안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 4. 제4조의3에 따른 수급관리방안 실행을 위한 지원
  - 5.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의 장려
  - 6. 그 밖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

장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유통 경로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제6조의 제목 "(계약생산)"을 "(계약생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계약생산, 계약출하 또는 계약거래(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을 "생산계약, 출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거래를 이행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과잉생산"을 "수급 불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제4조의 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으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를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중 "제9조"를 "제4조의4, 제9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
|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           | <u> 등</u> ) ①           |
| 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                         |
|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            |                         |
| 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            |                         |
| 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            |                         |
| 산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            |                         |
| 다)를 설치할 수 있다. <u>&lt;후단</u> |                         |
| <u>신설&gt;</u>               | <u>시 · 도지사는 「농수산자조금</u> |
|                             | 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        |
|                             | 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에         |
|                             | 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
|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u> &lt;신 설&gt;</u>         | 제4조의3(농산물 수급관리방안)       |
|                             |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        |
|                             | 항이 포함된 농산물 수급관리         |
|                             | 방안(이하 "수급관리방안"이라        |
|                             |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
|                             |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
|                             |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       |

산 및 출하 시기

사항

-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

   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

   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시·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 한 품목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여 금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수급관리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4(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으의 사항이 포함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이하 "수급안정사

<신 설>

<신 설>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 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u>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u> 다.

-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관리
-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 4. 제4조의3에 따른 수급관리방 안 실행을 위한 지원
- 5.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의 장려
- 6. 그 밖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농림업관측) ① -----

-----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 <신 설>

#### ② ~ ⑤ (생 략)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 기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 <u>다음 각 호의 사항</u> |
|-------------------|
|                   |
|                   |
|                   |
|                   |
|                   |
|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 |
| 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
|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
|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 |
| 한 유통 경로별 소비량, 소비  |
|                   |
| 실태 정보 등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6조(계약생산 등) ①     |
| <u> </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생산, 계약출하 또는 계   |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 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 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계약금 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u>과잉생산</u> 시의 생산자 보 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 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 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 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 금으로 해당 <u>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u>.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   | 약거래(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
|---|--------------------------|
|   |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
|   | 이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
|   | <u>같다)</u>               |
|   |                          |
|   | ②                        |
|   | 생산계약, 출하계약을              |
|   | 체결하거나 계약거래를 이행하          |
|   | <u> </u>                 |
|   |                          |
|   |                          |
|   |                          |
|   |                          |
|   |                          |
|   | <u>.</u>                 |
| 저 | 9조( <u>수급 불안정</u> 시의 생산자 |
|   | 보호) ①                    |
|   |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         |
|   | 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등 저장         |
|   | 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
|   | <u>및 가격안정</u>            |
|   |                          |
|   |                          |
|   | <u>농산물의 수매 등</u>         |
|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   |                          |

| 에서  | 해당 | 농산물을 | 수매할 | 수 |
|-----|----|------|-----|---|
| 있다. |    |      |     |   |

- ② · 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 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 1. (생략)
- 2. <u>제9조</u>,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 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 5. (생략)

③ ~ ⑤ (생 략)

| _ | <br>_ | _ | - |   | <br> | _ | _ | _ | _ | _ | _ | _ | - |   | _ | _ | _ | _ | _ | - | _ | <br> | <br> | _ | _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_ | _ | - |   | <br> | _ | _ | _ | _ | _ | _ | _ |   |   | _ | _ | _ | _ | _ | - | - | <br> | <br> | _ | _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br>_ | _ | _ | _ | <br>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_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현행과 같음)
- 2. <u>제4조의4, 제9조</u>-----

2의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